

대한솔루션 인권선언

2024년 2월

[개요]

1. 인권헌장 제정 목적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기본 권리이자 자유로 대한솔루션은 인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는 원칙을 인식하고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솔루션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등 인권·노동에 관한 국제적 원칙들을 지지하고, 해당 원칙들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한다.

2. 인권헌장 적용 범위

본 인권헌장은 대한솔루션 및 국내외 전 자회사와 그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솔루션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원칙]

1. 차별금지 및 다양성 포용

대한솔루션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모든 유형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이 존중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대한솔루션은 휴식 및 여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며,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3.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대한솔루션은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및 아동근로를 금지한다.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아동의 고용은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4. 산업안전보건

대한솔루션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대한솔루션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5.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대한솔루션은 임직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권리, 단체교섭 및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6. 인도적 대우

대한솔루션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7. 지역주민 인권 보호

대한솔루션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 자유를 보호한다.

8. 개인정보보호

대한솔루션은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무단접근, 사용, 파괴, 수정, 공개로부터 대한솔루션 임직원,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한솔루션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해당 국가의 법규를 반영한 국가별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한다.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

1. 관리체계 구축

(1) 인권경영 의사결정 기구 설치

대한솔루션은 최고이사결정권자 또는 주요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인권경영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인권경영 의사결정기구는 ① 인권경영 관련 계획 및 정책 ②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에 관한 사항 ③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 운영

대한솔루션은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실무조직을 두어 관련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인권경영 실무부서는 ①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② 위원회 운영 및 의결사항 이행 ③ 인권경영 관련 제도 마련 및 운영 ④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개선 ⑤ 인권 교육 실시 등을 수행한다.

2. 고충처리 절차 구축

(1)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창구 운영

대한솔루션은 임직원, 기타 외부인 또는 단체로부터 인권침해를 신고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는 이메일, 온라인 신고함, 핫라인, 휴대폰, SNS 등 다양한 채널을 구축 운영한다.

(2) 인권침해 신고 처리

대한솔루션은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법원 판례, 주무관청 규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최선의 구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3) 신고인 신분보장

대한솔루션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처리절차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임직원 교육

대한솔루션은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인권경영 추진 방향과 실행 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인권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인권경영 확산

대한솔루션은 인권경영의 실천 의무의 적용 범위를 내부로 한정하지 않고, 공급자, 기타 거래관계에 있는 조직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 리스크 평가]

1. 평가프로세스 운영

대한솔루션은 본 인권헌장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 발생 현황과 잠재적 인권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프로세스를 운영한다.

평가대상에게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서면점검(Self Assessment)하며, 평가대상 이 자가진단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내부규정 및 시스템 확인, 인터뷰 및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리스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현장실사(On-site Due Diligence)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서면점검 및 현장실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제3자 기관을 통한 별도심사 (3rd Party Audit)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점검·현장실사·제3자심사를 통해 발견된 '고위험' 및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개선이나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각 계열회사는 인권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및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한다.

2. 대응책 마련 및 이행

대한솔루션은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 리스크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대한솔루션 각 계열회사는 도출된 인권 리스크에 대한 개선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평가지표 개발

대한솔루션은 본 인권헌장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안) 등을 반영하여 근로환경, 근로 조건, 인력운영, 산업안전, 지역주민 및 고객의 인권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점검 및 실사 지표를 개발 및 운영한다.

4. 결과 공개

대한솔루션 인권경영 실무부서는 리스크 평가 및 이행 모니터링 관련 보고서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다. 해외법인은 보고서를 현지 언어로 번역하여 현지 정부, 기업,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